

##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7. 12. 14.

제안자 : 조영재 의원

### 수정이유

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조항(안 제35조)은 주택건설계획 승인에 따른 건축수수료 부과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과 주택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관계가 불명확하며, 입법체계상 적절치 않은 조문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수정주요내용

가. 안 제35조(건축허가 등의 수수료)를 전면 수정함.

- 1)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수수료 부과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문에 누락된 건축법의 근거규정을 삽입함.
- 2) 입법체계상 적절치 않은 조문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함.

##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5조(건축허가 등의 수수료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35조(건축허가 등의 수수료)** 「주택법」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을 포함한다)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「건축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<p><b>제35조(건축허가등의 수수료)</b>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을 포함한다)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해당 시·군 건축 조례로 정한 건축허가수수료를 충청북도에 납부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35조(건축허가 등의 수수료)</b> 「주택법」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을 포함한다)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「건축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p>

(별표1)

## 건축허가 등 수수료 (제35조 관련)

연면적의 합계	수 수 료
3만 $m^2$ 이상 10만 $m^2$ 미만	40만원
10만 $m^2$ 이상 30만 $m^2$ 미만	80만원
30만 $m^2$ 이상	160만원

※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.